

운영규정 개요

기관명	행복한 요양복지관	설치일자	2024.08.01
급여종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	9 명
대표자	권효경	협력의료	건강플러스연합의원
주 소	대구시 동구 안심로 22길 46 6층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2,500 원 (1식)	
	상급침실 비용	1인실 10,000원 (1박 기준)	
시설규모	건물면적 196.9㎡ , 연면적 1,430 ㎡		

구분	침 실	사무	요양 보호사	자원 봉사자	의료 간호	물리(작업)	프로 그램	식당/ 조리	화장 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 장
시설	○	○	○				○	○	○	○	○

시설급여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의료서비스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
특별보호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배상책임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입소계약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 체결 한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계약해지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용료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시설물 사용	시설물에 대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해서는 원상복귀 한다.